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17
----------	-------

발의연월일 : 2023. 12. 14

발 의 자 : 김성주 · 강훈식 · 김성환
민병덕 · 김종민 · 이동주
김한규 · 우원식 · 김병욱
설 훈 · 김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 · 중기 ·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는 사례,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응하지 못해 기업의 주가나 가치가 폭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 · 중기 · 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

에 공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선진국에서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표결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규명하도록 하고,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함. 아울러 기후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안 제159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9조의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2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무제표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단기·중기·장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온실가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
7. 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

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9조의2(기후변화 대응계획 등) ① 이사회는 제159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를 회사의 이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탄소중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59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직후에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59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종속회사 중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이 작성한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은 「상법」 제368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되, 해당 결의는 주권상장법인이나 이사회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부결한 경우 이사회는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신 설></u>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재무제표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u> <u>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u> <u>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u> <u>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계</u> <u>획(단기·중기·장기에 대한</u> <u>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u> <u>로 정한다)</u> 6. <u>온실가스(「기후위기 대응을</u> <u>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u> <u>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u> <u>실가스를 말한다. 이하 이 호</u> <u>에서 같다) 요소별 배출량과</u> <u>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u> <u>대한 감축 목표</u>

<신 설>

③ ~ ⑦ (생 략)

<신 설>

7. 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59조의2(기후변화 대응계획 등) ① 이사회는 제159조제2항 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를 회사의 이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탄소중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59조제2항 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직후에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59조제2항 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여
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연결재무제
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종속
회사 중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이
작성한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
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
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은
「상법」 제368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되, 해당
결의는 주권상장법인이나 이사
회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
진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안건
을 부결한 경우 이사회는 대응
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한다.